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1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4. 25.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

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S31803, S32050, S32205, S32750,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7. 두께 0.2㎜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양면에 0.05㎜의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가 코팅된 제품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공급국	공급자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티스코홍콩[TIS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나.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다. 타이강보세(S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인도네시아	3.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다. 이터널청산(ETERNAL TSINGSHAN GROUP LIMITED) 라. 골든하버(GOLDEN HARBOUR INTERNATIONAL PTE. LTD.)
대만	4.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다음 각 목의 관계사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다. 와이씨엘(Yieh Corporation Limited)
	5.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별표 3]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82
	3.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네시아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5. 그 밖의 공급자	25.82
대만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이예마우(Yieh Mau Corp.) 나. 탕엉(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7
	8. 그 밖의 공급자	9.07

비고: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가 제1호·제2호의 공급자, 제4호의 공급자 또는 제6호·제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